

---

#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

---

2021. 8. 10

관계부처합동

# 순 서

I. 건축물 해체공사 제도 현황 및 개선 필요성	1
II. 기본방향	2
III.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	3
1.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	3
2. 제도 이행력 강화	6
3. 상시감시체계 구축	9
IV. 향후 추진계획	11

# I. 건축물 해체공사 제도 현황 및 개선 필요성

## 1. 제도 현황

- 종전에는 「건축법」에 따라 건축물 해체시 신고만 하도록 규정중이었으나, 서울 낙원동 호텔 붕괴사고('17.1) 등 연이은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발생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
- ☞ 이에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허가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「건축물관리법」 제정('19.4)
  - 법 시행前 잠원동 붕괴사고 발생('19.7)하여 해체허가대상 확대 등 법개정 및 하위법령 마련하여 「건축물관리법」시행('20.5)

..... <제도 도입전 해체공사 사고사례> .....

- (낙원동 호텔 붕괴사고, '17.1) 건축물 상층부에 중장비 탑재, 폐기물 과다 적재, 잭서포트 보강 미흡 등으로 붕괴발생(사망2, 부상2)
- (잠원동 붕괴사고, '19.7) 재건축 현장에서 건축물 상층부에 중장비 탑재, 폐기물 과다 적재, 잭서포트 보강 미흡 등으로 주요 구조부(기둥) 붕괴에 따라 도로변으로 건축물 전도(사망1, 부상3)

## 2. 제도 개선 필요성

- 해체공사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광주 붕괴사고('21.6)가 발생하는 등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
  - 특히, 전국 해체공사장 안전점검(정부-지자체 합동점검) 실시(6.14~6.30) 결과, 총 210개 현장 중 73개 현장에서 총 153건의 위반사항 적발\*
  - \* 적발사항 대다수는 해체계획서 부실작성,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, 해체감리자 업무 수행 소홀 등의 제도 이행 부실에 관한 사항
  -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 반영 필요

⇒ 이에 따라 해체공사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(전문가 검토)를 통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추진 필요

## II. 기본 방향

목표

해체 공사 전 단계(허가-감리-시공)의 제도 이행력 강화

개선  
방향

- ① 해체공사 제도 단계별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 
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 
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 구축

핵심  
3대  
영역

(20대  
과제)

①  
해체공사  
단계별  
관리감독  
강화

해체공사  
허가

- ①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 
해체허가 대상 확대  
해체심의제 도입

해체공사  
감리

- ① 상주감리 도입  
업무수행도 수시확인

해체공사  
현장관리

- ① 착공신고 도입  
변경허가절차 도입  
시공기록 의무화

②  
제도  
이행력  
확보

현장  
이행력  
강화

- 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 
허가권자 권한강화  
안전점검 의무화

관련자  
교육실시

- ① 해체감리자 교육  
해체계획서 작성자 교육  
허가권자 교육

처벌기준  
강화

- ① 처벌기준 신설  
처벌수준 상향

③  
상시감시  
체계  
구축강화

안전점검  
확대·유도

- ① 현장점검 강화  
재난관리평가 활용

해체공사  
감시·안내  
체계 구축

- ① 안전신문고 기능강화  
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 개선

### Ⅲ.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

#### 1. 해체공사제도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<국토부>

##### ① 해체공사 허가 :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및 적정성 검토 강화

- (현황 및 문제점) 해체허가대상의 경우 관리자가 작성하고 전문가(건축사, 기술사 등)는 검토만 실시하며, 해체신고의 경우 검토도 하고 있지 않아 계획서 작성단계부터 내실있는 해체설계가 어려움

\* (신고대상) 연면적 500㎡미만, 높이 12m 미만, 3개층 미만 건축물 해체  
(허가대상) 신고대상 외 전체 건축물 해체

- 해체계획서 표준 서식 미비 및 작성법 안내가 부족하여 해체현장·작성자 특성별 계획서 작성 수준편차가 크게 발생

##### □ 개선방안

- ① (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) 해체허가대상은 전문가(건축사, 기술사)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해체계획서 **작성자 자격기준 신설**

- 해체신고대상의 경우 종전 해체허가대상과 같이 전문가 검토 의무화
- 해체계획서 표준 서식 및 작성 매뉴얼 마련을 통하여 **해체계획서 작성 수준 편차 최소화 및 내실화**

- ② (해체허가 대상확대)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\*\* 존재시 **해체허가**를 받도록 지자체가 **지역현황**을 고려하여 **해체허가 대상 확대**

\* 일정폭 이상 도로주변, 공사장 주변 일정반경 내 버스정류장 또는 횡단보도 위치 등

- ③ (해체심의제 도입) 해체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수준, 해체공법 선정,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**해체심의제 도입**

※ 심의대상은 조례를 통해 추가지정 가능하며, 필요시 해체공사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가능

⇒ (개선방법 및 시행시기)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('21.8), 표준 서식 및 작성매뉴얼 마련(연구용역 추진('21.7~12)) 및 배포('21.12)

## ② 해체공사 감리 : 상주감리 도입 및 해체감리자 업무수행도 제고

□ (현황 및 문제점) 상주감리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 현장이 비상주감리로 운영되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제한적

- 감리일지를 해체공사 완료 이후 해체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어 해체작업 중 감리 업무 수행 적정성 수시확인 제한

### □ 개선방안

① (상주감리 도입)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상주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, 해체신고 대상 중에도 위험성이 높은 공법 등\* 적용시 상주 감리원 배치 의무화

\* ① 폭파공법, ② 10톤 이상 중장비 탑재, ③ 특수구조건축물 해체

- (감리자) 필수확인점\* 해체시 해당 해체감리자 또는 소속 건축사, 기술사,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이 반드시 확인

\* 마감재 해체, 지붕층·중간층·지하층 해체 등 해당공사의 주요공정 의미

- (감리원) 해체공사 난이도, 건축물 해체 범위를 고려하여 감리원 배치기준을 차등화

해체범위	해체 감리자	상주 감리원 배치기준
해체 허가대상 (연면적 500m <sup>2</sup> 이상, 높이 12미터 이상, 3개층 초과)	건축사, 기술사, 엔지니어링 사업자	건축사보* 1명 이상
해체 신고대상 중 폭파공법, 10톤 이상 중장비 탑재 등 적용		건축사보 1명 이상
연면적 3,000m <sup>2</sup> 이상		건축사보 2명 이상

\* 건축사사무소, 기술사사무소, 건설기술용역업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

② (업무수행도 수시확인) 구축중인 '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'(21년 말 구축완료 예정)에 감리일지, 안전점검표 등\* 감리업무 수행 적정수준 확인을 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수시 등록·확인 기능 탑재

\* 감리일지, 안전점검표, 주요공정 및 필수확인점 공정의 작업영상 등

⇒ (개선방법 및 시행시기)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마련('21.8),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('21.하)

### 3 해체공사 현장 관리·감독 기능 강화

□ (현황 및 문제점) 착공신고제도 부재로 실제 공사 착수여부를 허가권자가 알기 어려워 안전점검·관리·감독 등 실시가 곤란하며, 지정된 감리, 시공사 등 건축관계자 간 계약 여부 확인 불가

○ 주요공법 변경이나 해체대상 변경시에도 변경허가절차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 곤란

#### □ 개선방안

① (착공신고 도입) 실제 공사착수 여부, 지정감리와의 계약 여부, 해체작업자(시공사)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**착공신고제 도입\***

▪ 해체감리자 변경, 해체작업자 변경 등 착공신고시의 주요사항이 달라지는 경우는 허가권자에게 **변경신고 실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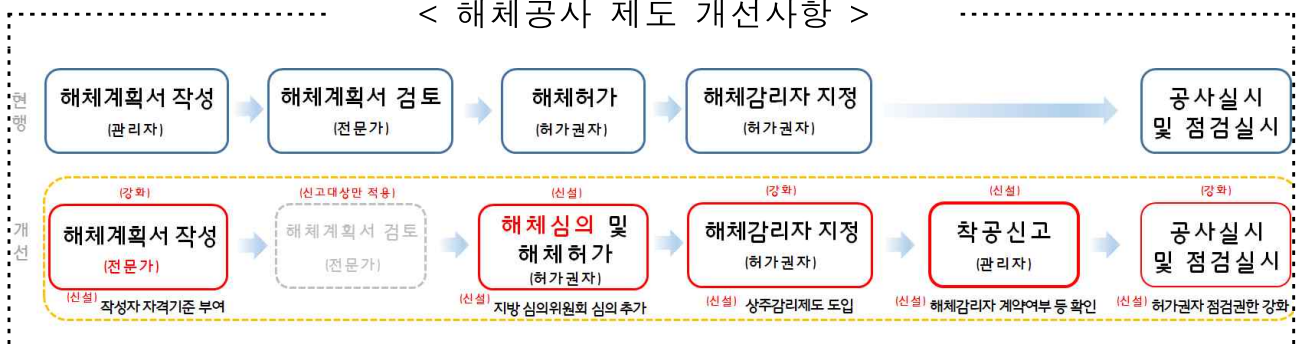
② (변경허가절차 도입)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, 해체대상 범위 변경, 해체순서 변경 등 해체공사 허가사항 관련 주요사항 변경시 관리자가 허가권자에게 **변경허가 승인 의무화**

※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사항의 변경은 해체감리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

③ (시공기록 의무화)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주요공정 및 필수확인점 **해체작업시 영상촬영 의무화**하고 완료신고시 제출

\* 마감재 해체, 지붕층·중간층·지하층 해체 등 해당공사의 주요공정 의미

< 해체공사 제도 개선사항 >



⇒ (개선방법 및 시행시기)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('21.8),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마련('21.8)

## 2.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조성

### 1 현장 이행력 강화 : 정책수립 · 일선행정 연계 체계 강화

□ (현황 및 문제점) 건축물 구조, 화재 등 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가 다양해지고 있으나, 일선 행정에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 한계 및 정책 이행도 저하

#### □ 개선방안

① (지역건축안전센터) 지역여건,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자체\*를 대상으로 센터 설치 확대 추진\*\*

\* 건축허가수준, 노후건축물(사용승인 30년 이상) 수준 반영

\*\* 현재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만 센터 설치 의무화(건축법, '22.1시행)

▪ 허가시 해체계획서 검토, 해체공사 변경허가 검토, 건축물 안전관리와 신속한 사고대응 등을 위해 일선 행정(지자체)의 체계를 강화 실시

② (허가권자 권한강화) 해체공사장에 위반사항 적발시 허가권자가 현장책임자(해체감리자 등)에게 즉시 공사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,

▪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한 개선조치 가능

③ (안전점검 의무화) 착공신고시 허가권자가 공사현장의 해체계획서에 따른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적정성 등을 공사전에 확인하고 허가권자가 착공신고 확인증 발급

▪ 감리일지 미등록시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'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' 기능 개선

⇒ (개선방법 및 시행시기)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법 개정안 발의 ('21.8),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기능개선('21.하)



**2 제도 관련자 교육실시 : 해체감리자, 허가권자, 건축사 등 전문교육 실시**

□ (현황 및 문제점) 감리자는 최초로 교육이수(16시간)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어 현장안전 관리·감독에 대한 전문성 부족 지적

- 또한, 구조안전 관련하여 해체계획서 작성·검토에 있어 건축사, 허가권자의 전문성 제고 필요

□ **개선방안**

① (해체감리자) **최초교육**을 **의무화**하고 교육과정도 현장안전관리 부실사례에 대한 대응교육 등을 포함하여 **현장과의 정합도 제도 및 교육시간 확대 추진**(16시간→35시간, 19시간 추가)

- 또한,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**보수교육**(매 3년, 7시간) **신설**
- 해체감리자 현장업무 매뉴얼도 마련하여 **현장 관리감독 수준 강화**

< 해체감리자 교육 추가(19시간) 항목(가안) >

교 과 목	시간	내 용
해체계획서 검토 방법	5	해체계획서 적정성 확인 방법 및 부실작성 사례 설명
해체현장 안전관리 요령	4	해체공사 현장점검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조치방법 설명
해체공사 사고 사례와 예방	3	해체공사 붕괴사고 사례 및 원인과 대책, 처벌사례 설명
실습 및 수료평가	3	해체계획서 검토 실습, 감리업무 실습 및 수료평가
해체공법의 이해	4	해체공법의 종류 및 안전관리 요령, 건축물 재료특성 및 파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

② (해체계획서 작성자) 해체계획서 표준서식에 따른 작성교육, 주요 부실작성사례 교육 등 **작성자(건축사, 기술사)대상으로 교육 신설**

- 특히 구조안전분야의 경우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통한 교육 추진

③ (허가권자) 허가시 해체계획서 검토방법, 현장점검 방법 및 위반 사항 발생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**교육 실시**

⇒ (개선방법 및 시행시기)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('21.8), 교육 기관 확대\* 및 교육과정 개편('21.하)

\* 국토안전관리원, 건설기술교육원 등 건설기술인 교육 대행기관 및 건축사구조기술사 협회

### ③ 처벌기준 강화 : 처벌기준 신설 및 상향을 통한 제도준수를 제고

□ (현황 및 문제점)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(시공자)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부재하고,

- 안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인 해체계획서 작성부실, 감리자 업무태만 등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음

#### □ 개선방안

① (처벌기준 신설)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 등 제도의 현장 이행과 관련하여 주요한 사항에 대한 **처벌기준 신설**

※ 건축법, 주택법 등 건축물의 설계·시공·관리에 있어 성격이 유사한 법률 고려

##### < 처벌기준 신설 주요사항 >

위반사항	개 선
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(시공자)	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* 공중의 위험 발생시 징역 10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(사상시 무기 또는 1년이상 징역)
필수확인점 등에 대해 영상촬영을 하지 않은 자 (감리자)	과태료 2,000만원
해체계획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(관리자)	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* 공중의 위험 발생시 징역 10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(사상시 무기 또는 1년이상 징역)

② (처벌수준 상향) 해체계획서의 부실 또는 거짓 작성자 처벌기준 강화(과태료→벌금)등 **위법사항 처벌수준 상향**

##### < 처벌수준 상향 주요사항 >

위반사항	현 행	개 선
해체공사감리자의 작업중지 요청을 무시한 자 (시공자)	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	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* 공중의 위험 발생시 징역 10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(사상시 무기 또는 1년이상 징역)
해체감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 (감리자)	과태료 500만원	과태료 2천만원 * 공중의 위험 발생시 징역 10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(사상시 무기 또는 1년이상 징역)
해체허가를 받지 않은 자 (전문가 및 관리자)	과태료 500만원	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* 공중의 위험 발생시 징역 10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(사상시 무기 또는 1년이상 징역)

⇒ (개선방법 및 시행시기)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('21.8)

### 3. 상시감시체계 구축 <행안부, 국토부>

#### 1 안전점검 확대·유도 : 촘촘한 안전점검 실시 및 실시결과 적극 활용

□ (현황 및 문제점) 우기·해빙기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에 해체공사 현장은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,

- 지자체의 해체공사 현장 등에 대한 자발적인 안전점검 실시 유인 부족으로 안전점검 수행에 소극적

#### □ 개선방안

① (현장점검 강화)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범부처·지자체가 실시하는 **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해체공사 추가** <행안부>

- 또한, 우기·해빙기 등 사고위험 발생 위험기간에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**집중점검도 실시\*** <국토부>

\* '21년 우기 집중 점검시에 해체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점검 기 실시

② (재난관리평가 활용) 지자체(243개) 대상 **재난사고 예방활동**(점검 등) **평가 강화**를 통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,

- 평가 결과를 부처의 **공모사업 선정 등에 활용**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책임성 강화 <행안부>

※ 재난관리평가 결과 활용방안 마련 및 관련법(「재난안전법」 제33조의2) 개정 추진

⇒ (개선방법 및 시행시기) 국가안전대진단 반영·실시('21년부터), 재난관리평가결과 활용방안 마련('21.10)

## 2 해체공사 위험사항 감시·안내체계 구축 및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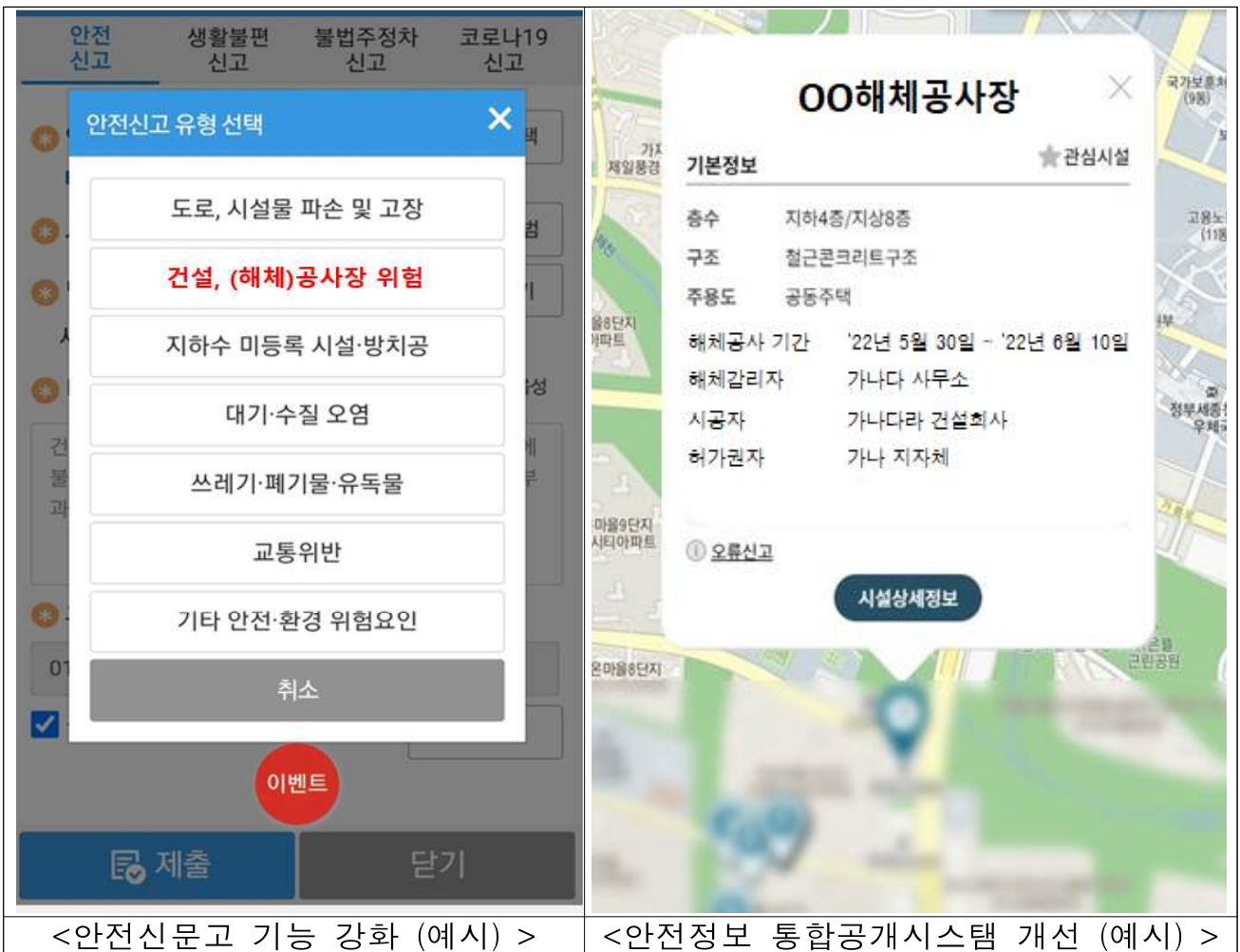
□ (현황 및 문제점) 국민들이 해체공사장 위험사항을 신고 및 개선 조치 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와 안전정보 안내체계 부재

### □ 개선방안

① (안전신문고 기능강화) 해체공사 현장 위험요소 신고 및 행정청의 조치를 위해 **안전신문고 앱(App) 기능 강화<행안부>**

② (해체공사장 안전정보 공개)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체 공사기간, 감리자 등 해체공사장 안전정보를 **대국민 공개 실시<행안부>**

※ 해체공사장 기본정보(위치, 공사기간 등)는 즉시 공개(8월)하고, 추가 공개정보(감리자, 시공자, 현장안전점검여부 등)는 법·제도 정비 이후 공개 추진



⇒ (개선방법 및 시행시기)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('21.8),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마련('21.8),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기능 개선('21.8)

## IV. 향후 추진계획

세부 과제	사업내용	주관기관 (협조기관)	추진일정
<b>실천과제 1. 해체공사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</b>			
① 해체공사 허가전	① 해체공사 작성 내실화	국토부	▶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('21.8)
	② 해체허가대상 확대		▶ 해체계획서 표준서식 및 작성 매뉴얼 마련('21.12)
	③ 해체심의제 도입		▶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('21.8)
② 해체공사 허가후	① 상주감리 도입	국토부	▶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마련('21.8)
	② 업무수행 수시확인		▶ 건축물 생애이력 시스템 기능개선 ('21.하)
③ 해체공사 진행	① 착공신고 도입	국토부	▶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마련('21.8)
	② 변경허가 절차 도입		▶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('21.8)
	③ 시공기록 의무화		
<b>실천과제 2. 제도 이행력 강화</b>			
① 안전정책 현장 이행력 강화	① 지역건축안전센터	국토부	▶ 건축법 개정안 발의('20.8)
	② 허가권자 권한강화	국토부	▶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('21.8)
	③ 안전점검 의무화		▶ 건축물 생애이력 시스템 기능 개선 ('21.하)

세부 과제	사업내용	주관기관 (협조기관)	추진일정
② 교육실시	① 해체감리자	국토부 (국토안전 관리원 등)	▶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('21.8)
	② 해체계획서 작성자		▶ 교육기관 확대 등 추진('21하)
	③ 허가권자	국토부 (인재개발원)	▶ 교육 기관 확대 및 교육과정 개편 ('21.하)
③ 처벌기준	① 처벌기준 신설	국토부	▶ 건축물관리법 발의('21.8)
	② 처벌기준 강화		
<b>실천과제 3. 상시감시체계 구축</b>			
① 안전점검 확대 유도	① 현장점검 강화	행안부 (국토부)	▶ 국가안전대진단 항목 반영('21)
	② 재난관리 평가 활용	행안부	▶ 평가 활용방안 마련('21.10)
② 시민 감시 체계 구축	① 안전신문고 기능 강화	행안부 (국토부)	▶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('21.8)
	②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		▶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마련('21.8)
			▶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기능개선('21.8)

추진 과제	개선내용
<b>1. 해체공사 제도의 단계별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</b>	
<p>① 해체 허가단계 내실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체계획서 <b>작성 자격기준 신설</b>(건축사, 기술사)</li> <li>■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 의무화 등 <b>허가대상 확대</b></li> <li>■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<b>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</b></li> </ul>
<p>② 상주감리 도입 및 해체 감리자 업무수행도 제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체허가 대상의 <b>상주감리 의무화 및 배치기준 마련</b></li> <li>■ 감리자 <b>업무수행도 수시확인</b> 시스템 구축</li> </ul>
<p>③ 해체공사 현장관리·감독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착공신고 도입</b>으로 해체공사 관계자 간 계약서 등 확인</li> <li>■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시 <b>변경승인 의무화</b></li> <li>■ 중요 해체작업 시 <b>영상촬영 의무화</b></li> </ul>
<b>2.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</b>	
<p>① 정책수립·일선행정 연계 체계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역건축안전센터 <b>설치 지자체 확대</b></li> <li>■ 현장 위반사항 적발시 조치권한 강화 등 <b>허가권자 권한 강화</b></li> <li>■ 착공신고 수리 전 <b>현장점검 의무화</b></li> </ul>
<p>② 해체공사 관계자 교육 실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감리자 <b>최초교육 의무화 및 교육시간 확대 추진</b></li> <li>■ 해체계획서 <b>작성자 교육 신설</b></li> <li>■ 허가권자의 해체계획서 <b>검토방법 등 교육 추진</b></li> </ul>
<p>③ 처벌기준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등에 대한 <b>처벌기준 신설</b></li> <li>■ 해체계획서 작성 부실 등에 대한 <b>처벌수준 상향</b></li> </ul>
<b>3.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 구축</b>	
<p>① 안전점검 확대·유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가안전대진단, 우기·해빙기 점검 시 <b>해체공사장 점검실시</b></li> <li>■ 지자체의 <b>재난관리평가를 실시</b> 및 결과를 <b>공모사업 등의 평가요소로 활용</b></li> </ul>
<p>② 해체공사 위험사항 감시·안내체계 구축 및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안전신문고 기능강화</b>를 통한 해체공사장 위험요소 신고 및 즉각조치 실시</li> <li>■ <b>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개선</b>을 통해 감리자 정보, 안전 점검 내역 등 해체공사장 안전정보 대국민 공개</li> </ul>